	규정	문서번호	TWP-A303	
		제정일자	1998. 03. 01.	
	교직과정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5. 04. 27.	
		개정번호	3	페이지

목 차

부칙
별표

작성부서	교무처	제정일자	1998. 03. 01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	
		직 책	담 당	교학부총장	학생처장	산학협력처장		기획처장
서 명								
일 자								




규정

교직과정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A303
제정일자	1998. 03. 01.
개정일자	2015. 04. 27.
개정번호	3
페이지	2/5

개정이력
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09. 03. 01.	- 6차 개정
2	2012. 07. 27.	- 교직 이수 과목의 변경으로 인한 내용 수정
3	2015. 04. 27.	-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,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

	규정		문서번호	TWP-A303
	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교직과정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15. 04. 27.
			개정번호	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법,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실기교사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직과목의 개설)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영역 과목의 개설은 정규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개설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학기 시간에 개설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학기간에 개설할 수 있다.

제3조(설치전공)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은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.<개정 2012.7.27>

제4조(이수대상)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검정에 승인을 받은 전공의 재학생으로 한다.<개정 2012.7.27>

제5조(이수과목 및 합격요건) ①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는 교직과목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을 대체한 이 대학교 개설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표시과목에 대해서는 교무처에서 년 1회 조사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2.7.27>

②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7.27>


제6조(위원회) 실기교사자격검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(위원 중 최소한 한명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 되어야 한다)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하고, 외부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위원회를 총괄하여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303
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교직과정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5. 04. 27.
		개정번호	3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검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 담당직원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교원자격 검정 신청)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교무처에 교원 자격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구비서류

가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(별지:1) 1부

나. 학적부 사본 1부

다.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원본은 지참)1부

2. 수수료

제12조(교원자격검정 신청기간)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에 의거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신청가능하다.

제13조(신청자격의 제한) ①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별표1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교원자격증의 발급을 받을 수 없다.

② 국가기술자격증은 졸업 이후에 취득하여도 교원 자격 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
제14조(자격증 기재사항 정정)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(별지:2) 1부

2. 교원자격증 원본

3.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

제15조(자격증 재교부 신청)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교원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(별지:3)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303	
		제정일자	1998. 03. 01.	
	교직과정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5. 04. 27.	
		개정번호	3	페이지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				처 리 기 간
				15 일
신청인	학 과		학 번	
	성 명		주민등록 번호	
	주 소	(전화)		
출원자격	초·중·등·교육법 제 21조 별표(2) 자격기준 제 호			
자격요건	졸업(예정) 년 월 일	년	월	일
	이수영역과목명			
	국가기술자격증 명 칭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출원인 _____ (인)</p>				
<p style="font-size: 1.2em; font-weight: bold;">동원대학교총장 귀하</p>				
<p>구 비 서 류</p>				수 수 료
<p>1. 간호사면허증 사본(양호교사에 한함)</p> <p>2.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실기교사에 한함)</p>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신청서				처 리 기 간	
				2 일	
신 청 인	학 과		학 번		
	성 명		주민등록 번호		
	주 소	(전화)			
	졸업(예정) 년 월 일	년	월	일	<input type="checkbox"/> 졸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졸업예정
정 정 내 용					
<p>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원 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_____ (인)</p>					
동원대학교총장 귀하					
<u>구 비 서 류</u> 1. 교원자격증 2. 주민등록초본(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)				수 수 료 _____	

[별지 제3호 서식]

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				처 리 기 간
				2 일
신 청 인	학 과		학 번	
	성 명		주민등록 번호	
	주 소	(전화)		
	졸업 (예 정) 년 월 일	년 월 일	<input type="checkbox"/> 졸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졸업예정	
자 격 종 별				
자 격 증 번 호		발급년월일		
재교부신청사유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_____ (인)</p>				
<p style="font-size: 1.2em;">동원대학교 총장 귀하</p>				수 수 료